



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1. 1.] [조례 제2784호, 2022. 10. 31., 일부개정]

충청남도 예산군(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), 041-339-7905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·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2.10.31.>

1. "어르신"이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.
2. "지급대상자"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말한다.

제3조(지급대상 및 기준)

- ① 지급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.
- ②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.
 1.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: 월 30,000원<개정 2018.12.31.>
 2.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: 1명당 월 20,000원 추가<개정 2018.12.31.>

제4조(지급신청 등)

-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만 80세에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·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10.31.>
- ② 읍·면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·제출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.
- ③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·전출 등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어르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.

제5조(대상확인 및 지급절차)

- ① 읍·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.
 1.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
 2.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
 3. 그 밖에 봉양상태와 특이사항 등
- ② 읍·면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예산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에게 제출한다.
- ③ 군수는 읍·면장으로부터 신청 현황을 제출받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매 월 지급한다.

제6조(지급의 정지 등) 읍·면장은 수당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급대상 제외자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1. 대상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
2.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
3.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,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
4.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읍·면장이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

제7조(대장 비치 등 관리) 읍·면장은 봉양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장, 지원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85세가 넘는 어르신 봉양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 2009년 8월부터 지급한다.

부칙 <제2338호, 2016.12.3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92호, 2018.12.31>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84호, 2022.10.31>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